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소홀

기 관 명 중구, 동구, 동래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내 용

「지방세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동래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상

속이 개시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 17건 / 33,894,460원 추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구청장, 동구청장, 동래구청장, 사하구청장,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과세누락된 취득세 17건 / 33,894,460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